

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(제6조의2제2항 관련)

1. 인력
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

가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1)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·농생물학·농화학·응용생물학·원예학·원예과학·산림자원보호학·자원식물학·자원식물개발학·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식물보호기사·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(중전의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)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- 3)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

2. 장비

가.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등을 갖추 것

나.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갖추 것

다.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갖추 것

라. 구급약품을 갖추 것

3. 그 밖의 사항

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등에 대하여 「항공사업법」 제7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